

서비스 이용자들

89. 위원회는 권고한다.

환자의 권리헌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줘야 한다. 보건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계획에 보건부와 법정위원회 및 전문인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가 보건 기구들 (보건부와 남아프리카 의료 서비스)

90.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보건의료 재원 할당의 불균형을 도시와 시골지역 사이의 불균형은 물론 도시지역과 읍구(邑區) 사이의 불균형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은 1회한 일괄공제 세금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국영 기관의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그들의 의무와 책임 및 권리를 의식하도록 해줘야 한다.

보건의료 전문인들은 환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결정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는 책임과 특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은 환자가 구급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SANDF는 SADF의 작전이나 혹은 그 작전에 참여한 결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적절한 정신적 육체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타 국가가 지원한 폭력이나 해방운동의 폭력에 참여했거나 혹은 그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도 필요하다.

모든 보건의료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옹호하고 증진시키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 ▽ 진료의 독립성
- ▽ 제도적인 독립성
- ▽ 환자 보호

연구와 출판물

9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전문인 단체들과 법정위원회, (위에서 언급한) 보건 및 인권기구는 특히 자기들의 권리를 모를 수 있는 상처받기 쉬운 주민들 사이에서 하는 조사 관행을 감시해야 한다.

과학적인 고문과 심문 방법에 대한 연구를 금지시켜야 한다.

남아프리카는 생화학무기에 관한 국제 협약의 모든 조항, 특히 그러한 무기를 연구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남아프리카 메디칼 저널'(SAMJ)은 국가와 남아프리카 의료협회(MASA) 등과 같은 이해단체로부터 독립된 편집권을 가지고 있다.

SAMJ의 편집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대표자들도 참여해야 한다.

92. 이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실행할 책임과 그 실행을 감시할 책임은 다음과 기관들에 있다.

- a) 보건부 — 전국 및 지방 보건국
- b) 법정위원회
- c) 전문인 단체
- d) SANDF
- e) 보건학부
- f) 인권위원회
- g) 보건 관련 NGO

□ 미디어

93. 국가가 언론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조사대상 기간 중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한 자유제한 자체가 법에서 정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아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에 접근할 권한이 거부되었고, 군부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기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미디어를 통제하는 법률과 제한 규정들은 백인이 지배하는 미디어에서 자체검열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철저히 밝혀 내지 못하거나 증거가 밝혀졌더라도 거리낌없이 큰 소리로 떠들지 못했다.

법률

9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미디어를 통제하는 법률은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야 한다.

정보원(情報源)을 밝힐 것을 강요하는 형사소송법 205조는 철폐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자는 비밀리에 얻은 정보원에 대한 직업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국제기자연맹의 행동규범을 따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 국가가 정보 유출을 막을 필요성은 물론, 미디어가 정보원을 보호할 권리와 미디어의 정직성을 보장할 어떤 새로운 공식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표현의 자유 및 다양한 의견에 대한 제한을 줄이기 위해 모든 법

를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 편집문제에 정부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국가 정보기관이나 보안기관이 기자 및 기타 미디어 종사자들 가운데서 요원을 모집하거나, 혹은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독립성

95.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남아프리카 방송공사는 정부와 업계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유지해야 한다.
'독립방송위원회'가 지닌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대체 미디어

96.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민중 출판물과 지방 방송국의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입법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다양한 미디어의 목소리를 장려해야 한다.

제도 언론은 다양한 미디어의 목소리를 장려하도록 돕는 일, 예를 들면 다른 출판업에 자금을 대주고 자원을 제공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 출판물들이 Grassroots, South and Saamstaan 처럼 자타가 인정하는 지방 출판물의 노선에 따라 성장해야 한다. 짐바브웨와 파푸아뉴기니 같은 다른 나라들의 모델들도 개발되어야 한다.

미디어 자율 규제

97.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제도 언론은 지방 편집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자들과 협의하여 편집현장을 마련함으로써, 신문에 보도되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의 폭을 넓혀주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인쇄 매체와 방송사들은 기자 및 기타 종사자들의 고용계약서에, 어느 국가 정보기관이나 안보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해고조건이 될 수 있는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기자단체와 편집인들은 뉴스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국가정보기관이나 안보기관의 요원들과 접촉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정도를 논의해야 한다. (뉴스를 수집할 목적으로 만나는 이와 같은 접촉에 대해 최소한 문서로 편집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게 하도록 권고한다.)

미디어의 고용주들은 기자들에게 국가 정보기관이나 안보기관으로부터 과거에 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돈을 받은 기자들은 앞으로 그러한 기관이나 그와 비슷한 기관의 활동을 취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과 고용문제

98.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미디어의 고용주들은 차별시정계획을 강화하고 미디어 내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흑인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자격 있는 흑인들이 모든 뉴스편집실에 더 많이 채용되도록 하고, 관리직과 전문직의 모든 수준에서 적절한 성(性)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러 언론노조는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일치된 전략과 접근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99. 이러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실행할 책임과 그 실행을 감시할 책임은 주로 다음과 기관에 있다.

- a) 체신 통신부
- b) 남아프리카 방송공사
- c) 독립방송위원회(IBA)
- d) 출판사들, 즉 독립신문사, NasPers, TML
- e) 신문연합회
- f) 노동조합, 즉 남아프리카 언론노조, 흑인 언론노조
- g) NGO

□ 보관중인 위원회 자료와 공개⁸¹⁾

100. 위원회가 하는 일의 주요 측면 중 하나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국가의 일을 자세히 살펴 볼(public scrutiny) 수 있도록 하는 책무였다. 전산화된 데이터 은행은 물론, 서류와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그림 및 사진 형태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록들은 보존되어야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국민의 자산이다.

101. 공문서 보관법 11조(2)와 13조(2)는 공문서 보관자의 서면허가 없이는 공적인 기록을 (한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실로 양도하거나, 삭제, 파괴 혹은 다른 형태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02. 공문서 보관법은 또한 불후의 가치를 지닌 공적인 문서는 20년이 지나면 반드시 공문서

81) 위원회는 이 권고사항을 공문서화 하는 데 전문적인 도움을 준 UNESCO의 Trudy Huskamp Peterson에게 사의를 표한다.

보관소로 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문서 보관자는 정부의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더 빨리 국립기록보존소로 이관해야 할 기록들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03.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위원회의 모든 기록은 최종 보고서의 부록이 공개되면 국립기록보존소로 이관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모든 기록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과 비밀성 및 관련된 문제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으로써, 접근을 거부할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없는 한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자신의 안전이 위협하다고 느낄 경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자세한 진술내용을 공개하거나 보류하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희생자들은 자신이 관련된 서류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서류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이 원할 경우 그 서류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위원회의 기록들을 국립기록보존소로 이관할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 내용에는 기록들에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기록보존소에 있는 위원회의 기록들에 접근하도록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야 한다.

- ▽ 위원회의 기록들이 2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기록에의 접근문제는 공문서 보관법 12(1)조에 따라 공문서 보관자가 결정해야 한다.
- ▽ 보호를 요하는 기록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공문서 보관자는 법무부에 접근요청을 해야 한다. 그 외 다른 모든 기록들의 경우에는 제한 없는 공개 접근 방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 ▽ 이미 공유된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은 국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대로 곧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청문회 기록 사본, 사면 결정 이유서, 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위원회웹사이트(www.truth.org.za)에 공개되어 이미 이용할 수 있게 된 다른 모든 자료.
- ▽ 국립기록보존소는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인수하여,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일반민중이—위원회의 보고서를 비롯—현존하는 자료들을 웹사이트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많은 기록들이 컴퓨터 파일에 저장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 웹사이트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위원회의 기록들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립 공문서 보관소에 적절한 추가 자금을 할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기록보존소는 위원회 기록물 관리비에 관한 포괄적인 예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국민들이 청문회의 기록 사본과 소리 및 비디오 장면을 비롯한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 공문서 보관소가 전국적으로 분산된 '기억 센터'를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특별 지원을 해줘야 한다.

104. 이러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실행할 책임과 그 실행을 감시할 책임은 다음과 같은 기관

에 있다.

- a) 문화 예술부, 과학 기술부
- b) 법무부

□ 문서의 파괴

105. 우리 역사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지만 유쾌하지 못한 기록들을 파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권력을 잡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고발할 수 있는 기록들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특히 가소로운 일이다. 이 같은 파괴를 막기 위해서, 국가의 기록보존소에 적절한 법적 권한을 주어야 한다. 공문서 보관법에 들어 있는 필요한 법률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입법

106.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정부는 앞으로 제정될 지방 공문서보관법에 국가 공문서 보관법의 특징들이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국립기록보존소가 공문서 보관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공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 기관들을 검열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할 재원이 없으면 무의미하게 된다.

정부는 국립 공문서 보관소가 정부의 기록 보관 업무를 감사하는 기능을 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기록보존가 어느 정부부처 (현재 문화 예술, 과학 기술부)의 부속 기관이 아니라 독립기관이 될 필요가 있다. 국립 공문서 보관소를 대통령이나 부통령 소속 기관으로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보안기관을 이 보관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보안기관의 기록이 지닌 민감성 때문에 합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 국립 공문서 보관소의 전문적인 감독을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한다.

법률 이행

107.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안전·보안부는 남아 있는 보안부서 기록들을 모두 국립기록보존소로 이관해야 한다.

국가 정보원과 남아프리카 비밀 첩보부는 1995년 이전의 모든 문서를 보관하는 일을 마무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문서는 국립기록보존소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인권침해 행위 관련 국가 기록은 처분권을 가진 다른 당국이 승인했다라도 국립 기록보존소의 명백한 승인 없이는 파괴하면 안된다.

SANDF는 보관중인 모든 국가 안전관리 체제(NSMS)의 포괄적인 기록목록을 작성하여 국립 기록보존소에 제출해야 한다.

남아프리카 정부는 (현재 SANDF의 문서고에 있는) 서남아프리카 지역군(South West Africa Territory Force)의 잔존 기록들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문서 원칙에 따라 당연히 나미비아의 것이므로 나미비아 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같은 종류의 민간 기록에 대한 협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부의 안보관련 입법이사회, 안보관련 구속자, 정치범 및 사형수에 관한 문서들을 국립 기록보존소로 이관하는 문제는 보관소와 해당 부서들이 협의해야 한다.

안보기관은 인종차별정책의 보안조직원들이 허가 없이 없애버린 문서를 찾아내어 회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립기록보존소는 (공문서 보관법 3<d>조에 의거) 비공식 기록들을 수집하고 (중요 인물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구술역사 프로젝트를 장려함으로써 공식적인 기록물들의 틈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

국립기록보존소가 위원회의 기록물들 (이들 자체가 남아프리카의 사회적 기록물들의 많은 틈을 메워줄 것들임)을 이양 받아, 전문적으로 분류 정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108. 이들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실행할 책임과 그 실행사항을 감시할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은 부서에 있다.

- a) 문화 예술, 과학 기술부
- b) 법무부
- c) 국방부, 특히 SANDF
- d) 국가정보기관
- e) 안전 보안부, 특히 SAPS
- f) 외무부

□ 해방운동

109. 위원회는 해방운동이 인종차별정책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옳은 명분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110. 위원회는 또한 이와 같은 갈등의 과정에서,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민족해방전쟁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그 의정서에 서명한 유일한 당사자이고, 그 협약의 기본 틀 안에서 행동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으며, 그 행동을 조사할 몇 개의 위원회를 만든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111. 그래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해방운동은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은 사과를 해야 한다.

- ▽ 망명 중에 인권침해를 당한 모든 희생자들
- ▽ 재판 없이 구금된 사람들과 구금되어 재판 받고 무죄로 밝혀진 사람들

해방운동은 모든 반론을 철회하고, 재판 없이 구금된 사람들과 구금되어 재판 받고 무죄로 밝혀진 사람들의 명단을 분명히 공표해야 한다.

해방운동은 인권침해 희생자들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해방운동은 망명 중에 실종된 모든 사람의 행방과 운명을 확인해줄 길을 모색해야 하고, 그와 같은 확인조사의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 국제 인권

국제 인권기구

112. 위원회는 남아프리카가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비준할 것을 권고 한다.

-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및 그 의정서
-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

정부는 남아프리카의 법률과 관행이 국제적인 의무수행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CEDAW)을 인준한 후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유엔 제4차 세계 여성회의에 정부 고위대표단이 참석한 후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내부적인 정책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새로운 국제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 ▽ 해방전쟁과 내전을 치르는 방식

▽ 전쟁과 내전, 혁명, 폭동 혹은 게릴라전에서 무장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은 오늘날에는, 비록 재판을 거쳤더라도 탈영병이나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의 재판은 오늘날의 모든 국제적인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구금조건과 공정한 재판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네바 협약과 그 여러 가지 의정서들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

이웃 국가들에 대한 사과

113. 위원회는 나미비아를 비롯한 이웃나라들의 시민들로부터 과거 남아프리카 정부의 대표들이 취한 조치 때문에 심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많은 진술을 들었다. 위원회는 그러한 클레임을 처리할 자원과 시간이 없어 그러한 폭력행위를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주라고 권고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고통을 정부간의 협상에서 배려해야 한다.

우리의 이웃나라 국민들에게 과거에 저지른 폭력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조상(彫像)이나 기념비, 장학금이나 혹은 다른 형태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통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상징적인 보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이웃나라 시민의 고통에 대한 남아프리카 시민의 감정이입(感情移入)과 그들과의 연대성에 대한 인식을 과시해야 한다.

인종차별정책을 반인류 범죄로 고발

114. 인종차별정책을 반인류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인종차별정책과 그 관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국제적인 고발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다. 위원회는 '국민의 일치와 화해 촉진법'과 이 위원회의 활동과정이 그러한 정책의 책임문제를 적절히 다루어왔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결론

115. 이 장은 이 장을 시작한 곳에서 결론을 짓는다. 화해는 끝이 없고 비싼 대가를 치르며 혼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이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문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화해를 위해서는 더 품위 있고 더 많이 보살펴주는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억압받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일에 얼마나 투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시민으로서 그들의 정당한 몫을 다하도록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Truth Commissions: Reports: El Salvador

Chapter V. Recommendation

엘살바도르 진실위원회 권고사항

— 목 차 —

서 문.....	2
가. 전체적인 결론	
나. 원칙	
다. 권고의 대상이 되는 인물과 기관	
1. 조사결과에서 직접 추론한 권고사항	5
가. 군대에서 해임	
나. 공직에서 해임	
다. 공직자격 박탈	
라. 사법개혁	
2. 조사대상 행위와 직결된 구조적 원인 근절	8
가. 군대의 개혁	
나. 공안영역의 개혁	
다 불법단체들에 대한 조사	
3. 불법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혁.....	10
가. 사법부	
나. 인권보호	
다. 국립 시민경찰	
4. 국민적 화해를 위한 조치	13
가. 물질적 보상	
나. 정신적 보상	
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포럼	
라. 국제적 후속작업	

서문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의 일부이다. 실제로, 위임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위원회의 위임사항에는 조사결과를 보고 생각해낼 수 있는 법적, 정치적 혹은 행정적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권고사항에는 폭력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할 조치들과 국민적 화해를 주도적으로 촉진할 일들이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마련하기 전에 위원회는 먼저 위원회의 조사결과, 그 조사와 권고사항의 근거가 된 원칙, 위원회가 다룬 인물들과 기관들에 대해 전반적 논평을 하기로 결정했다.

가. 전체적인 결론

엘살바도르에서 심각한 폭력행위를 엄청나게 야기한 원인과 조건은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나라의 역사와 뿌리깊은 부정(不正)관계는 단순히 어느 지역 주민이나 어느 집단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이런저런 정부기관, 역사적인 전통, 심지어 바로 최근까지 계속 되어 엘살바도르가 희생물이 되고 삼화가 된 동서양의 이념투쟁도 단순히 구성요소들일 뿐이다. 이들 모든 요인들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12년 기간 동안 엘살바도르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위원회가 이들 모든 요인들을 다루어 주도적 요구하지 않았고 또 그럴 수도 없다. 그 대신에,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기본적인 권고사항을 공식적으로 마련하게 해줄 문제들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엘살바도르에서 인권보장이 결여되고 국가가 법치의 지배를 받는 원칙에서 벗어나 운영되어 온 사실은 엘살바도르의 한두 개 정부보다도 살바도르 국가 자체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법치의 지배를 받는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입법적 및 제도적 메카니즘은 이론상 존재하고 최소한 부분적으로 존재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나친 실용주의 때문인지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군사 당국자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대 내의 몇몇 부대들이 이탈하기 어려운 노선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종종 몇몇 영향력 있는 민간인과 결합하여 결국 민간당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사법 입법 행정 어느 부도 사회에 대한 군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억제할 수 없었다. 사법부는 협박에 굴복함으로써 약화되었고 그것이 부패의 기초가 되었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진정한 독립을 누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쓸모가 없어졌고 마침내 복지부동(伏地不動)과 소름끼치는 굴종을 통해, 국가가 겪은 비극에 기여한 요인이 되기에 이르렀다. 정치지도자들(국회의원들은 물론 행정부의 요원들)이 만들어낸 흔히 기회주의적인 여러 가지 제휴가 군사체제의 일부를 형성하는 군과 경찰 및 공안기관에 대한 민간의 지배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암살단”으로 알려진 불법무장 단체의 폭넓은 조직이 불처벌을 보장받고 제도권 안팎에서 활동함으로써 테러를 살바도르 사회 전체에 확산시켰다. 이 단체는 원래 민간인들이 계획하고 자금을 대고 통제하는 민간사업으로 출발했다. 핵심간부들은 원래 단순히 실행자와 집행자의 역할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점차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이념적 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암살단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군사체제에서 실제 목적과 위임사항에 모순되게, 민간당국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 되었다. 이 단체는 완전히 특정한 간부 그룹의 불모였다. 때로는 간부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되기도 했던 이들 간부들은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그들과 어떤 민간 서클의 관계를 악용했으며, 그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기를 꺼리는 동료간부들을 위협했다.

국내 무장 반대세력간의 갈등은 격렬해졌고 규모도 커졌다. 그 필연적인 결과가 폭력행위였다. 갈등이 피비린내가 나면 날수록, 갈등이 확산되면 될수록, 군 고위층의 권력과 무장 반란 단체를 지휘하는 사람들의 권력이 더 커졌다. 그 악의에 찬 서클이 거둔 성과는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에게는 어떠한 행정적 또는 정치적 제한도 받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가장 비열한 면책특권을 갖게 만든 상황이었다. 아주 원색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국가의 실권을 휘두른 사람들은 그들이었다. 반면에 행정 입법 사법부는 정부 부서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서글픈 사실은 이들 부서가 사실상 최저한의 권한을 가진 허울뿐인 부서로 전락한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실종, 중요한 정부관리들과 교회지도자 및 판사들에 대한 암살 기도, 이러한 악행의 가해자들이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던 사실 등. 암살단의 범죄수법(modus operandi)을 달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기이한 것은 사법부의 부패하고 겁이 많고 허약한 망상조직과 그 조사기구들이 민족해방전선(FMLN)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제도의 효과적인 기능을 크게 저해했다는 점이다.

엘살바도르가 이전의 상태(status quo ante)로 되돌아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행정 입법 사법부 사이에 적절한 힘의 균형을 확립하고 강화하며 모든 군대와 의회, 정보 및 공안기관들에 대한 완벽하고도 명백한 민간통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다음 권고사항에서는 이러한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개혁이 법치가 지배하며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지향해나가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나. 원칙

위원회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1990년 4월 1일에 체결된 제네바 협정에 따라, 정치적인 수단으로 무장세력간의 갈등을 빚는 상황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종식시키고, 나라의 민주화를 촉진하며, 인권을 무제한 존중하고, 살바도르 사회를 재통합할 목적으로 시작된 과정의 일부이다. 이러한 목적들의 첫 번째 것은 이미 달성되었다. 나머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어떤 점에서는 항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 목적은 상호 보완적이다. 즉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그 터전을 잃어버린다. 민주적인 정체(政體)의 표현인 법치가 없으면 독재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지 않으면 사회 재통합을 얘기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조사결과와 전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마련한 살바도르 사람들과 그 협정을 지지한 절대다수가 만들어낸 최근의 역사를 배경으로 윤곽이 잡혀진 이러한 목적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들을 제공해준다. 이 목적들은 지금 건설하기 시작한 사회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 사회의 운명에 관한 기본적인 결정을 국민의 손에 맡기고, 기본적인 정치적 도구로서 대화와 협상에 우선권을 주는 민주주의.

둘 소수를 다수와 통합하고 개인적 집단적 차원의 인간공존을 중시하는 모델로서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 참여. 또한 개인 사이에 단합과 존경심을 증진시켜주는 참여.

셋 : 법을 앞세우고 존중하는 것이 평등을 보장하고 모든 전제(專制)를 배척하는 문화의 기반이 되는 법치(法治).

넷 : 전술(前述)한 원칙들의 존재이유이며, 모두가 동등한 자유와 존엄성을 부여받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사회의 기초인 인권 존중.

살바도르 사회에서 민간의 최고권위를 공고히 다지고 군대가 그 권위에 필연적으로 복종케 하는 것은, 바로 법치와 인간존엄성이 지닌 근본적인 가치 및 그 가치에 의해 철저히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국방과 공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의 최고권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의미심장한 행보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모든 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위원회는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와 독립되고 강하고 유능한 사법부를 강화하기 위한 평화협정 규정과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실행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경험한 너무나 명백한 결함들이 극히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되게 했고 조직적으로 그것이 되풀이되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 같은 침해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어야 완전히 일소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권고의 대상이 되는 인물과 기관

위원회의 위임사항은 권고의 대상이 될 인물과 기관을 명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다. 위임사항이 확정해놓은 것은 이 권고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양측, 즉 정부와 FMLN이 위임한 일에 관한 절차이다. 멕시코 협정에 서명하면서 양측은 현재 그 임무를 완료해가고 있는 절차

를 만들었다. 양측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실행하기로 약속했다 (진실위원회에 관한 협정 10항). 그러므로 바로 그들을 향해 권고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한다. 권고사항이 다른 기관들에 해당되는 경우, 특히 그 권고사항이 행정부와 다른 국가 기관들이 조치를 취하고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부의 경우, 정부의 약속은 그 권고사항을 해당 국가 기관이 실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장세력간의 갈등이 끝났으므로, 성격상 제도화되어야 할 대부분의 권고사항은 당연히 관공서 부문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 한다. FMLN에 권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이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행위나 관행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은 평화협정과 그 협정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달성되어 왔다. 그렇다고 현재의 상황이 위원회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활동하는 FMLN에게, 언제나 모든 형태의 폭력투쟁을 단념하고, 항상 민주주의에 적합한 합법적이고 개화된 수단을 고수함으로써, FMLN의 지배 하에서 자행된 것으로 이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심각한 폭력행위를 초래한 수단들을 영원히 포기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지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시하려 한다. 분명한 것은 모든 권고사항이 똑같은 중요성이나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 점이다. 조사결과를 보고 바로 생각해낸 것으로서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할 권고사항들은, 조사한 행위들과 직접 관련되는 요인들이나 혹은 그 행위가 밝혀졌어야 할 때 밝혀지지 않은 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요인들을 즉시 제거하려 하고 있다. 제 2의 권고사항들은 위원회가 조사한 행위들과 직접 관련되는 어떤 구조적 결함을 고치려 하고 있다. 세 번째 그룹의 권고사항들은 그러한 행위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국민적 화해에 관한 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1. 조사결과에서 직접 추론한 권고사항

이 부분에서, 위원회는 조사해서 밝혀달라고 요구해온 행위들에 관한 조사결과에서 나온 직접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결론인 권고사항들을, 그 행위들과 직접 관련되는 현실이 여전히 온 나라에 충만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 권고사항들은 성격상 가장 시급히 실행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실행되어야 할 권고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 군대에서 해임

진실위원회가 조사하여 공개한 사건들의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중대한 폭력행위나 은폐에 개인적으로 연루되었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일을 주도하고 협력해야 할 직업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 장교들의 실명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그런 장교들이 아직 군에서 복무중이면 그들을 그 직위에서 해임하고 제대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미 은퇴했거나 제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래 '다'항에 기술되어 있는 조치를 적용할 것을 권고

한다.

나. 공직에서 해임

진실위원회에서 조사한 사건들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또한 공직과 사법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실명도 밝히고 있다. 이들 전문직 공무원들은 중대한 폭력행위들을 은폐했거나 조사결과 그러한 행위들에 대한 그들의 책임이 확인된 사람들이다. 위원회는 이런 사람들을 현재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직이나 사법부의 자리에서 해임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미 그러한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래 '다'항에 기술되어 있는 조치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다. 공직자격 박탈

위원회가 조사한 것과 같은 폭력행위를 범한 사람들을 국가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앞 항에서 말한 사람들은 물론, 개별사건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있는 공무원들과 FMLN 요원들을 포함하여 이 보고서에 기술된 폭력행위들에 똑같이 연루된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10년 동안 어떤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하고, 공안기관이나 국방에 관련되는 활동을 영원히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규정을 직접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전국 평화정착위원회'(COPAZ)가 살바도르 법률에 따라 이 문제를 적절히 보장할 임시 법안을 마련할 것과 이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빨리 통과되도록 할 것을 권고할 권한은 갖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공직자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 기관들에게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도록 권고할 권한도 갖고 있다.

라. 사법 개혁

사법개혁을 하기로 합의한 모든 사항은 실행되어야 한다. 이 개혁이 위원회의 다른 권고사항들의 주제가 될 몇 가지 추가조치로 보완되어야 하더라도, 평화협정 때 이 문제에 관해 합의한 사항들은 즉시 예누리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의 개혁

평화협정의 일부로 승인한 개정헌법은 사법부를 지휘하는 기구인 대법원 판사들을 선임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제시했다. 이러한 혁신은 법원이 헌법개정과 평화협정 이전에 적용된 규정에 따라 선임된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직 판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은 중대한 폭력행위를 발생시킨 불처벌(impunity)에 대해 사법부가 져야 할 책임이 막중한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대법원 판사 임명을 더 이상 연기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 현직 판사들은 그 직책을 사임함으로써 개정헌법이 즉각 발효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나) 전국 법관회의

평화협정은 국가기관과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전국 법관회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멕시코 협정: "헌법개정에 관한 자세한 정치적 합의" A <1>; 차플테펙 평화협정 제 3장

<1> <A>). 그러나 1992년 12월 국회에서 채택된 '전국 법관회의 법'에는 이 회의의 상당수 구성원에 대한 해임을 대법원의 자유재량에 사실상 일임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도를 바꾸고, 명확한 법적 사유가 있어야 이 회의의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국회는 헌법상 이 회의의 구성원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므로 그들을 해임을 결정할 권한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마. 판사들

이 보고서가 제출될 날에 대비해서 개정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사법부의 직업공무원 법'은 '전국 법관회의'의 엄격한 평가에 의해 사법적 소질과 능력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과시하고 독립성과 법적인 분별력, 정직성과 공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판사들만이 사법부의 직업공무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위원회는 이해하고 있다.

바. 형벌

위원회가 중대한 폭력행위를 조사하여 규명한 결과와 직결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러한 행위의 책임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과 사법부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위원회는 아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위원회에는 책임자들을 직접 처벌할 권한이 없다. 위원회는 사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할 형벌을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항은 성격상 당연히 사법부에 속하는 기능이며, 위원회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현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따로 떼어서 거론할 수가 없다.

그 현실 중에서 가슴아픈 한 가지 분명한 양상은 특히 국가기관이 직접 저질렀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한 범죄의 경우, 사법조직이 그 범죄를 조사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너무나 명백히 무능한 현실이다. 정부와 FMLN이 진실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창설하여 사법 담당기관이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수행하도록 합의한 것은 이 같은 결함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다. 사법 기능이 만족스럽게 발휘되었다면 위원회가 조사해야 했던 행위들이 적기에 규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형벌도 부과되었을 것이다. 법원이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엄호 아래 자행된 폭력행위들에 대해 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사정은 그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던 상황의 일부이자 한 덩어리이며 그러한 상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분명히 나온 결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조건이 같으면 사법부가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현실에 대해 공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사법부의 구조는 아직도 이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와 실제로 똑같다. 사법개혁 문제는 평화협정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동안에 합의되었으므로, 당시에는 사법부를 탈바꿈시킬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더구나, 이제는 극복되어야 할 상황의 주요 부분이 된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 여전히 사법부를 운영하고 있고, 그들의 관행이 가까운 장래에 바뀔 징후도 전혀 없다.

이 같은 생각들이 위원회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문제는 죄를 처벌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공중도덕은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기를 요구한다. 엘살바도르 사법부에는 최소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믿을만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것이 나라의 현실이며 이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살바도르 사회의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조사한 문제들에 주요한 책임이 있는 환경 속에서는 그 문제들에 대한 믿을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했더라면 이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법제도가 국민적 화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의감을 길러줄 만큼 아직 바뀌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반대로, 정의에 대한 합당한 소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 하는 사법적 논쟁은 오랜 좌절감을 되살려 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화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완벽하고 시기에 맞는 태도로 재판을 하리라고 위원회가 기대할 수 있는 사법제도는 평화협정에 비추어 구조 조정된 사법제도뿐일 것이다.

2. 조사대상 행위와 직결된 구조적 원인 근절

평화과정은 분명히 사회의 지지를 받아 구조적인 개혁을 유도하며 이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상황에 기여한 많은 결함들을 해결하는 일련의 정치협정을 이끌어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위원회는 반드시 모든 협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가장 강력히 권고한다. 그것은 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하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기획한 것이었으며, 또한 살바도르 국민들이 기대하고 믿고 바라는 바이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일반적인 논평에 편견을 갖지 않고 몇 가지 권고사항을 추가하고자 한다.

가. 군대의 개혁

1. 평화협정과 헌법개정에서 윤곽이 잡혀 있는, 새로운 모델로 탈바꿈해야 할 군의 혁신은 민간당국의 치밀한 감독 아래 빨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국회 내에 여러 정파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민간당국에 대한 군의 복종, 고급장교 및 지휘관 진급의 민주적 관리, 엄격한 예산운영, 군 조직의 폭넓은 분권, 군의 새 독트린 및 교육제도 적용, 장교들의 꾸준한 전문화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현행 군 관련 법률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를 지체없이 완료하여, 군 관련 법률이 새로운 정치체제와 군의 새로운 독트린 및 인권 존중에 대한 요구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3. 앞 항에서 언급한 개혁 가운데에는 불법적인 명령을 받는 하급자의 입장을 해결해 주기 위한 단순하고 현실적인 절차를 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복종하기를 거부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급자로부터 받은 명령에 하급자가 언제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육군규정 173조의 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에서 하는 의식의 일부로서 국기에 충성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는 서약문에서 그런 복종을 서약하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른바 "무조건 복종"이 명백히 불법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무고함을 입증해주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4. 앞에서 말한 개혁은 또한 군인들이 그 신분을 이용하여 권력을 남용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모든 행위들을 군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도록 해야 하며, 형벌부과에 편견을 갖지 않고 해임을 포함하여 가해자가 받을 적절한 행정적 법적 형벌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 엄격한 해임제도로,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행위나 혹은 군 기관에 악영향을 끼쳐 해임된 사람을 다시 받아들 이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5. 사관학교에서 참모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사교육과정에는 인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준 높은 자격을 갖춘 민간 교수진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6. 외국의 선례에 따라 군 장교들을 위한 선진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에는 그 과정이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이라는 신념에 확고하게 기초를 두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7. 평화협정에 의해 창설된 군 명예법정(The armed forces Court of Honour)은 현역과 예비역 및 지금은 해산된 준군사 단체들, 즉 모든 불법 무장단체들의 관계를 근절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나. 공안영역의 개혁

평화협정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군대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던 전(前)보안부대(CUSEP)를 해산하고 민간의 안보를 새로운 순수 민간기구인 '국립 시민경찰'에 위임한 결정이었다. 위원회는 새로운 기구를 위한 지침을 성실히 지킬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경찰의 탈(脫)군사화는 엘살바도르에서 크게 진일보한 조치이다. 국립 시민경찰이 전 보안부대나 혹은 다른 군부대와 관련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 불법 단체들에 대한 조사

최근 몇 년간 나라를 휩쓸었던 가장 무서운 폭력의 원천 중 하나는 완전히 불처벌의 특혜를 누리며 활동했던 사설 무장집단이었다. 이들 집단이 해체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라의 역사를 감안하면, 이 영역에서의 예방조치가 절대로 필요하

다. 이들 집단이 활동을 재개하게 될지 모를 위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권고하며, 새로 설립된 국립 시민경찰이 아직 초창기에 있으므로 도움을 줄 위치에 있는 우방국 경찰의 지원을 비밀경로를 통해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

3. 불법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혁

이것 역시 법치에 필요한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적 틀을 제시해주는 모든 평화협정에서 합의된 개혁의 실행과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도적 개혁이 중요하기도 하고 평화협정에서 명백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강조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 사법부

엘살바도르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사법제도의 개혁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 프로그램은 강화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사법개혁을 민주화 과정과 연결시키려는 법무부의 노력은 높이 살만하고 반드시 성과를 얻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별도의 논평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1. 살바도르의 사법제도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가장 두드러진 결함들 중의 하나는 사법부를 지휘하는 기관인 대법원과 대법원장에게 기능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점이다. 이 같은 기능의 집중은 하급 재판소의 판사들과 변호사들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법제도 전체를 해치고 있다. 이 문제의 형식적인 기원은 헌법에 있다. 그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자체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대법원이 나라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면서 사법부의 행정 수반이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해야 하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2. 판사는 대법원이 아니라 독립된 '전국법관회의'에서 임명되고 해임되어야 한다.
3. 판사는 자기가 관할하는 법정의 재원을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하고, 전국법관회의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변호사나 공증인의 개업을 허가하고 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을 정직시키거나 처벌하는 기능은 대법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독립된 특별기구에 맡겨야 한다.
5.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할당하도록 헌법에 규정된 예산은 새로운 법정을 창출하고 판사들

의 봉급을 개선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6. 위원회는 정당한 절차를 밟는 권리 행사를 강화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한다.

- (가) 법정 밖의 자백은 무효로 처리할 것.
- (나) 무죄로 추정될 피고의 권리를 어떤 상황에서나 보장할 것.
- (다) 경찰과 법관은 구속기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위반자들은 즉시 처벌할 것을 보장할 것.
- (라) 소송절차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행사할 변호권을 강화할 것.

7. 사법연수원의 고유한 기능에 최대한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을 인용하면—이 연수원은 전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판사들 사이에 일치 단결하는 유대와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해 조리 있는 전반적인 비전을 확립해주는 연구소로 여겨진다. 새로운 법원에 기용할 새롭고 건전한 인적 자원을 교육하거나 위원회가 권고한 평가에 따라 사법부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과 대체할 사람들을 위한 단기과정도 필요하다. 이것은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국제적 협력을 받기 쉬운 영역이다. 위원회는 그러한 도움을 줄만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지체 없이 협력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우선 먼저 '유럽 경제공동체'에 과감하게 호소한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여러 회원국들과 살바도르의 법체계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나. 인권 보호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 및 법률 개정과 유엔 역사에 전례가 없는 '유엔 인권검증단' 배치를 비롯하여 이 문제에 관한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사항은 이러한 합의사항들을 엄격히 지키고 인권에 관한 ONUSAL(유엔 엘살바도르 평화유지단)의 권고사항들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영역에서 평화로 가는 과정의 일부로 제출된 모든 제안에 추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싶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은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위원회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 1) 전국 인권옹호 변호사단 사무국을 강화해야 한다.

- (가) 변호사단이 ONUSAL의 지원과 모든 정부 및 민간 관련부문의 참여로, 국제적인 협력을 비롯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국의 현황과 가장 시급한 우선사항 및 필요사항들을 평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 (나) 사무국의 존재가 여러 부문에 설치된 사무국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다) 사무국은 그 권한을 더욱 자주 활용하여 특히 구급하는 장소가 있는 국내 어느 현장이

나 시설을 검열해야 한다.

2) 헌법적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구제책(amparo)과 인신보호영장 제도(habeas corpus)가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주민들이 이 같은 구제책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것을 들어주는 법률상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 모든 1심 판사들은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amparo와 habeas corpus에 의한 구제책들을 들어줄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하며, 이 같은 권한은 치안판사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대법원만 이러한 절차의 중심(終審)이 되어야 한다.

(나) amparo와 habeas corpus에 의한 구제책들이 정식 절차규정처럼 비상사태를 포함한 어떤 상황에서도 정지될 수 없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인권규정들의 헌법적 효력이 재확인되어야 한다. 헌법에는 명백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엘살바도르가 지킬 의무가 있는 인권협약과 같은 다른 문서에는 언급되어 있는 규정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구금제도 역시 많이 바뀌어야 한다. 무고한 사람에 대한 폭행과 심지어 실종이 이러한 구금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가) 관리들이 구금을 명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과 구금하는 이유를 자세히 명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나) 구금기간은 절대 최단기간이 되어야 한다.

(다) 행정당국에는 자유 박탈을 포함하는 벌칙을 부과할 권한이 없어야 한다. 그러한 처벌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정에서만 부과되어야 한다.

5. 구금자에 관한 현행 정보 시스템을 반드시 확장할 것을 권고한다. 어떤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든 모든 구금자의 최신 명단이 전국 인권옹호 변호사단 사무국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고 그들의 소재지와 법적인 신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주무관청은 구금한 사실과 체포에 참여한 요원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앞으로 형법개정을 어떻게 하든, 국가기관이 범죄에 대한 기존 범주를 수정하여 새로운 범주를 정하거나 혹은 특별히 악화되는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지원을 하여 자행한 범죄들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7. 인권침해의 희생자였던 사람은 누구나 피해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하고 신속하고 손쉬운 구제책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8. 국가가 인권보호를 위한 세계적 및 지역적 제도를 준수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국제적인 차원의 어떤 결정도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엘살바도르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가) 다음과 같은 국제적인 수단들을 비준할 것. 즉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87호와 98호'(Convention Nos. 87 and 98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조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방지 및 처벌에 관한 미주협약'(the Inter-American Convention to Prevent and Punish Torture).

(나) 다른 모든 중앙 아메리카 공화국들이 한 것처럼, '미주 인권협약'에 의해 설치된 '미주 인권법원'(Inter 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할 것.

다. 국립 시민경찰

위원회는 주민을 지켜주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평화협정이 정의한 모델에 따라 창설된 국립 시민경찰과 그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일반적인 권고사항에 덧붙여,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중대한 폭력행위에 수반된 불처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수사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로, 위원회는 평화협정에서 결정된 범죄수사 기구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발족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국립 시민경찰과 공화국 법무담당관실의 합동작전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제적인 기술 및 재정적 협력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둘째로, 위원회는 '범죄행위 수사 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권고한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중대한 인권침해가 은폐된 것은 이 위원회의 태만 때문이었다.

4. 국민적 화해를 위한 조치

협상의 틀을 제시하여 평화협정의 틀을 마련해준 1990년 4월의 제네바 협정은 무제한의 인권존중을 보장하고 나라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 이외에, 평화과정의 목적을 평화회복과 국민적 화해 및 살바도르 사회의 재통합으로 정의했다. 마지막 두 가지 목적은 복합적인 것이며, 적대행위의 중지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단계가 포함되는 과정에 달려 있다.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목적들에 직면해 있다. 국민적 화해 없이는 살바도르 사회의 재통합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살바도르 국민의 형제적 일치 없이는 국민적 화해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나라가 연대와 공존과 관용의 새로운 관계로 특징지어지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과거에 발생된 모든 사건을 씻어내며 대결의 상황에서 조용히 동화되는 상황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의 현실에 대해 온 국민이 함께 반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그러한 현실을 영원히 근절하기 위한 보편적인 결의이기도 하다.

괴롭지만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단계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무슨 일이 다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의 중요한 양상을 규명하는 어려운 일을 맡았고, 그 일이 이 보고서를 통해 완수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화해와 살바도르 사회의 재통합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실만으로 충분치 못하다. 용서가 절대로 필요하다. 즉 처벌만은 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고치려는 보편적인 결의에 바탕을 둔 용서, 저지른 행위가 아무리 혐오스럽더라도 현재로서는 바꿀 수가 없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완성될 수 없다는 확신에 바탕을 둔 용서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용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숨을 돌리고 이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중대한 행위들의 진상규명에서 추론할 수 있는 확실한 결론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아마도 나라의 현실로 보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한 가지 결론은 정의에 대한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즉 죄를 처벌하고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이 장(章) 서문에서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봉착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위원회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넘어서는 이 어려움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법제도의 결함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범죄들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정당한 재판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있고 그 범죄를 계획하거나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위원회의 권한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다룰 수 없다. 정의가 실현된 후 용서를 통해서만 이 같은 현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를 통해 직접 추론할 수 있는 위의 권고사항들을 즉시 실행하는 것이, 국민적 화해와 살바도르 사회의 바람직한 재통합을 위한 적절한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정의는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정의는 보상도 요구한다. 희생자들과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가족들은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FMLN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FMLN이 그러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반면에 공공기관이나 그 요원들의 행위와 잘못이 여기에 기술된 폭력행위의 원인들이 되었을 경우나 혹은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이 의무가 국가로 넘어간다. 그러나 나라의 재정적인 제약과 국가를 재건할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에 권고한 노선에 따르는 보완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 물질적 보상

1.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물질적 보상을 해주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권한을 가진 자치법인인 특별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재단은 진실위원회에 보고되어 이 보고서 부록에 포함되어 있는 희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2. 재단은 국가로부터 적절한 기부금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국제 공동체로부터 실질적인 기부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국가와 FMLN의 의무에만 매달리지 않고 국제 공동체, 특히 부유한 국가들과 엘살바도르의 갈등과 안정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준 나라들에게 이 같은 목적의 재단을 설립해주도록 긴급히 호소한다.

나. 정신적 보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것을 권고한다.

1. 갈등에 희생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새긴 엘살바도르 국립 기념비 건립.
2. 희생자들의 명예와 그들을 희생시킨 중대한 범죄 인정.
3. 갈등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국민적 화해를 상징하는 역할을 할 국경일 제정.

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포럼

위원회는 이 보고서와 그 결론 및 권고사항과 국민적 화해의 진척도가 살바도르 국민 전체에 의해 검토될 뿐만 아니라, 전술한 목적과 더불어 권고사항의 엄격한 실행을 감시하려고 노력할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부문들로 구성되는 특별 포럼에 의해서도 분석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포럼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예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협정에 따라, "협상에서 결과되는 변화의 과정을 감시하고 그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구"로서 '전국 평화정착위원회'(COPAZ)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가 말하는 과업을 주로 COPAZ에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그래서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다른 중요한 주제의 범위를 감안하여, COPAZ가 그 회원수를 늘여 COPAZ를 직접 대표하지 않는 시민사회 부문이 이 분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하고 싶다.

더구나 COPAZ는 평화협정에 의해 평화과정에 관련되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위임받은 기구이다. 이런 면에서 COPAZ는 법개정을 요구하는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라. 국제적 후속작업

위원회는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사(史)에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 된 유별난 과정의 일부로서 위원회가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해 왔다. 엘살바도르의 비극은 국제공동체의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현재의 평화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엔은 당사자들이 실행하기 시작한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이행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협정을 확인할 책임도 있다.

위원회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엘살바도르 담당 전문가(Independent Expert)에게 그의 임무에 따라 또한 그 임무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진실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를 해주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Guatemala Memory of Silence Report
of the Commission for Historical Clarification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

과테말라 '역사적 진실규명위원회' 권고사항

— 목 차 —

1. 서문.....	1
2.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	3
3. 보상조치.....	4
4.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문화를 배양할 조치.....	9
5. 민주적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12
6. 평화와 국민화합을 촉진시킬 기타 권고사항	19
7. 권고사항 이행을 촉진시키고 감시할 담당기구	21
8. 유엔에 대한 요구사항	23

(譯註 : 과테말라 정부와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URNG>은 1996년 12월 4일 오슬로에서 내전종식에 합의하고 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어 동년 12월 29일 과테말라 대통령궁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997년 7월 위원 3명과 실무자 272명으로 구성된 진실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위원회는 9권에 달하는 보고서를 1999년 2월 25일에 발표했다.)

1. 서문

오슬로 협정은 CEH (역사적 진실규명위원회, Comisión para el Esclarecimiento Histórico) 의 세 가지 목적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위원회는 과테말라에 평화와 국민화합을 고취시킬 특별한 권고사항들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 위원회는 특히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문화를 배양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권고할 것이다."

포괄적인 인권 협정 (the Comprehensive Agreement on Human Rights), 평화협정에 대한 확인과 수용 및 이행 일정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Compliance and Verification Timetable for the Peace Agreement), 과테말라 민족혁명 연합의 법적 통합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on the Basis for the Legal Integration of the Guatemalan National Revolutionary Unity) 등과 같은 다른 협정들에서 명백히 언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CEH도 무장세력간의 갈등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조치를 위한 개략적인 권고사항들을 제시해야 한다.

CEH는 평화협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한 그것을 널리 유포시키는 것이 민주적 법치의 기초를 놓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 때문에 CEH는 이 협정에서 확인한 공약들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권고사항 준비에 적용된 방법론은 CEH가 실시한 조사 결과와 여러 부문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광범위한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에 근거를 두었다. CEH가 1998년 5월 27일에 개최한 '권고사항에 관한 전국 토론회'에는 139개의 시민단체에서 400명이 참석했으며, CEH가 내놓은 기본적인 중요한 제안들에 반영할 사항들을 제시해주는 유용한 원천이었다. CEH에서 행한 개인적인 증언과 전술한 협의 과정 중에 표명된 요구사항 및 제언들을 끊임없이 참고하며 이 장을 썼다.

평화를 이뤄나가는 기본 틀 속에서 CEH에 위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EH가 권고한 사항들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단체의 공동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으로 모든 과테말라 사람들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것을 기초로 해서 CEH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짜여진 권고사항들을 제시한다.

1.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
2.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치
3. 인권을 상호 존중하고 지켜주는 문화를 배양하기 위한 조치
4.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5. 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다른 권고사항
6. 권고사항 이행을 촉진하고 감시할 기구

무장세력간의 갈등 및 그와 관련된 폭력의 영향은 두 당사자들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었다. 희생자자가 어떤 부문의 사람들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었다. 거의 모든 과테말라 국민들이 그 처럼 널리 그처럼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폭력에 이래저래 영향을 받았다. 이 때문에 CEH의 권고사항은 기본적으로 과테말라의 일치를 용이하게 하고 수세기 동안 고통받은 분열을 추방하려 하고 있다. 화해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CEH는 과거를 아는 기초 위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장세력간의 갈등 및 그와 관련된 폭력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이제 단순히 희생자들 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국민화합을 위한 주역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폭력과 참사들을 보고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과테말라의 후 세들에게는 더 밝고 더 좋은 미래를 가질 권리가 있다. 과테말라 국민들은 국민적인 공동사업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해야 한다. 영구적인 평화와 화해를 기초로 과테말라의 사회구조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국민들 가운데 진정한 국민적 일치의를 배양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CEH는 이 권고사항으로서 폭력의 역사가 결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과테말라 국민들의 희망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2.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

오늘로 협정은 과테말라에서 발생한 동족상잔(同族相殘)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CEH는 개인적 및 집단적 역사기억이 국민적 정체성의 기반이라고 믿는다.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이 같은 역사기억(historical memory)의 한 가지 기본적인 양상이며,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당화시켜 준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1998년 12월 29일 공화국 대통령이 호소한 용서와 1998년 2월 19일에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이 호소한 용서를 고려하여,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희생자들의 존엄성

1. 과테말라국가의 이름으로,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기본목적은 가지고, 공화국 대통령은 과테말라 전(全)사회와 희생자들, 그 친척들과 그들의 공동체앞에서 이 보고서에 기술된 행위들을 인정하고, 그 행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국내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특히 군과 국가 공안부대가 저지른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것.
2. 공화국 의회는 희생자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재확인하고 그들과 친척들의 영명(令名)을 회복시켜 주는 엄숙한 선언을 발표할 것.
3.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의 전 사령부는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려는 기본목적은 가지고, 과테말라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과거 게릴라들이 자행한 폭력행위들에 대해 전(全)사회와 희생자들, 그들의 친척들과 그들의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엄숙하게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질 것.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4. 과테말라 국가와 사회는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념할 것. 그 활동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희생자 기념일 지정.
 - 나) 전국적 차원과 지역 및 도시 차원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기념비 건립과 공원 조성
 - 다) 교육센터와 빌딩 및 주요 도로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배정할 것.
5. 무장세력간의 갈등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기념제와 기념식은 과테말라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성격을 고려할 것.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 당국은 기념물 건립과 공동묘지 조성을 마야 공동체를 기억하는 형태에 따르도록 촉구하고 허가해야 한다.

6. 무장세력간의 갈등 기간 동안 훼손된 신성한 마야 유적지들은 피해를 입은 공동체의 소망에 따라 복구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할 것.

3. 보상조치

CEH는 진실과 정의와 보상과 용서가 평화와 국민적 화해를 공고하게 하는 과정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희생자들과 그들의 친척들을 위한 보상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과테말라 국가의 책임이다. 그 기본 목적은 희생자들에게 영예를 주고,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관련되는 인권침해와 폭력행위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국가적 및 국제적 인권 기준을 존중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의 보상계획

7. 과테말라 국가는 정부와 공화국 의회가 취한 적절한 조치에 의해,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관련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의 희생자들과 그 친척들을 위한 보상계획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8. 이를 위해, 정부는 무장세력간의 갈등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국가 보상계획을 촉진시킬 보상법안을 최단시일 내에 공화국 의회에 제출할 것.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보상계획의 일반적인 원칙과 구성, 수혜자의 범위, 기준, 수혜자 확인 절차, 지급 방식과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원칙과 조치

9. 국가 보상계획에는 평등의 원칙과 사회참여 및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신이 내포된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시킬 것. 그 가운데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들어 있어야 한다.

가) 물질적 소유물의 복원을 위한 조치. 특히 토지 소유권의 경우 가능한 한 훼손 이전의 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나) 인권침해와 인도법(humanitarian law)을 위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 가장 심한 상해와 손실에 대한 배상 혹은 경제적 보상을 위한 조치.

다) 심리사회 재활과 보상을 위한 조치. 여기에는 무엇보다 진료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보호 및 그밖에 법률적 사회적 서비스가 포함 되어야 한다.

라) 인간존엄성의 회복과 충족을 위한 조치. 여기에는 도덕적 상징적 보상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10. 폭력의 형태에 따라 그 보상조치는 개인적인 보상이거나 공동체적인 보상이 되도록 할 것. 공동 보상조치는 희생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에 오명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집단적 인권침해와 폭력행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위한 공동 보상조치는 지역 단위의 화해 촉진 계획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직접적인 보상 이외에 다른 조치와 혜택이 희생자와 가해자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11. 보상조치가 국가의 재건과 화해조치의 주요 기반 중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과테말라 사회가 국가 보상계획(National Reparation Programme)에 대한 정의(定義)와 실행과 평가에 능동적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할 것. 이 같은 참여는 유별나게 폭력행위의 피해를 심하게 입은 마야계 주민들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공동 보상조치를 하는 특수한 경우, 보상조치의 우선권을 정하는 일에 수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수혜자

12. 도덕적 물질적 보상조치의 수혜자는 국내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관련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의 희생자들 (또는 그들의 친척들) 대상으로 삼을 것.

13. 보상계획의 목적으로 보아, 희생자는 국내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관련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에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간주할 것.

14. 개인적인 경제적 보상이 적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피해의 정도와 그들의 경제 상황 및 사회적인 취약성을 고려하고, 노인과 과부, 미성자, 어느 모로 보나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수혜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

15. 보상계획의 수혜자는 분명하고 정의롭고 신속하고 접근하기 쉽고 폭넓게 참여한 기준에 따라 확인할 것.

보상계획의 인원구성

16. 보상계획의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① 2명은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② 2명은 공화국 의회가 임명하며, ③ 1명은 인권 민원조사관이 지명하고, ④ 1명은 희생자 단체의 대표로 하며, ⑤ 1명은 인권단체의 대표로 하고, ⑥ 1명은 마야계 단체의 대표로 하며, ⑦ 1명은 여성단체의 대표로 할 것.

17. 상기 단체들의 대표 임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권 민원조사관이 지명한 사람이 각 단체를 소집하여 임명절차를 용이하게 할 것.

18. 보상계획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가) 수혜 대상자들로부터 개인 또는 공동 신청서를 접수한다.

나) 사건 내용에 따라 수혜 대상자의 신분이 희생자인지 희생자의 친척인지를 사정(査定)한다. 이 보고서의 사건 부록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의 희생자들은 다른 조사를 더할 필요 없이 희생자 자격이 자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과거에 희생자로 확인된 수혜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상태를 사정한다.

라) 전자(前者)의 사정을 근거로 하여 수혜자를 결정한다.

마) 관련 보상조치를 결정한다.

19. 국가는 평화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진보적인 세계개혁을 전면 단행하여 국가 보상계획에 자금을 조달할 것. 이를 위해, 사회 비용을 재분배하고 군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재정의 주요 원천이 되어야 한다.

20.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국가는 국내 무장세력이 갈등하던 기간 중에 당사자들에게 군사적 재정적 원조를 제공한 국가들에게 국제적인 협력을 간절히 요청할 것.

시행 기간

21. 국가 보상계획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동안 시행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신청서 제출을 위해 정해진 기간과 특전을 할당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10년 이상이라야 한다.

강제 실종(Forced disappearance)

무장세력간의 갈등기간 중에 과테말라에서 반복된 관행으로 횡행하던 강제 실종 범죄의 규모를 감안하고, 그 실종이 감금된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장기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을 모르는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법적 행정적인 문제를 야기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실종으로 인한 고통과 분규가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긴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국가 보상계획에 포함되도록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실종자 수색

22. 정부와 사법부는 시민단체와 공동 협력하여 강제 실종으로 알려진 모든 사건에 관한 조사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개시할 것. 동원될 수 있는 모든 법적 물질적 자원이 실종자들의 행방을 밝히는 일과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유해를 친척들에게 인도하는 일에 활용되어야 한다.

23. 과테말라 군과 전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은 국내 무장세력간의 갈등기간 중에 발생한 실종자들과 관련, 그들이 갖고 있을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

요구사항: 실종자 수색과 관련하여,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전문기구인 국제 적십자위원회(ICRC)가 수색활동을 담당하는 과테말라의 여러 국가 기관에 조언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실종되어 불법입양되거나 불법적으로 가족과 떨어지게 된 어린이들에 관한 특별권고사항

24. 정부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포함하여, 실종된 어린이들에 대한 수색을 시급히 활성화할 것.

가) 실종된 어린이들을 수색하기 위한 전국위원회 설치. 이 위원회의 목적은 실종되어 불법적으로 입양되거나 불법적으로 부모들과 떨어지게 된 어린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실종을 문서로 입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언과 요구 : 전국 위원회는 인권 민원조사관(Ombudsman)과 인권 및 아동을 위한 민간기구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UNICEF(유엔 아동 기금)와 ICRC 및 아동문제 전문 비정부 기구들의 자문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며, CEH는 이들의 협력을 간절히 요청한다.

나) 법정과 사법재판소 및 외톨이가 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기구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할 경우 어린이들의 서류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어린이들의 신원과 인종, 나이, 출생지, 현재의 행방, 무장세력간의 갈등 중에 입양되거나 보호조치 되면서 포기한 실명(實名)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도록 할 입법조치 촉구.

다) 국내 모든 지역과 타국의 난민 수용소에서 스페인어와 모든 토착어로 이들 어린이들의 수색과 관련되는 활동과 조치들에 관한 광범위한 홍보운동 실시.

25. 홍보매체는 실종 어린이 수색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

26. 정부는 입양된 사람이나 그 친척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친부모가 알지 못하거나 친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입양에 대한 정밀 조사를 허용하는 비상 입법조치를 촉구할 것. 상기 정밀 조사는 반드시 입양된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여, 양부모와 친족 사이의 애정 어린 관계를 촉진하고 입양된 사람에게 후유증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강제 실종으로 인한 법적 부재신분(status of absence) 인정

27. 정부는 강제 실종으로 인한 부재선언(declaration of absence)이 법적인 친자관계와 상속, 보상 및 그와 관련되는 다른 민권문제를 유효하게 하는 법적 범주(legal category)임을 인정하는 법률안을 준비하여 공화국 의회에 제출할 것.

적극적인 발굴 정책

CEH는 무장세력간의 갈등에 희생된 사람들의 유해발굴과 감춰진 비밀묘지를 어디서든 찾아내는 일 그 자체가 정의로운 행동이고 보상의 행동이며 화해의 길로 한 발짝 다가서는 중요한 조치라고 믿는다.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인 것은 그것이 진실을 알 권리의 일부를 찾아주고 실종자의 행방을 알아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보상의 행동인 것은 희생자를 소중하게 대접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은 이들을 각자의 문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매장할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가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하고, 또 이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비밀묘지가 상당히 많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묘지도 있는 것을 고려하여,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28. 정부는 적극적인 발굴정책을 개발하고 준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발굴절차를 정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권고사항을 고려한 발굴법안(Law of Exhumation)을 공화국 의회에 시급히 제출할 것.

29. 발굴절차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존엄성과 문화적 가치관을 충분히 존중하여 시행하고, 발굴절차가 하나의 사법절차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개인 및 공동 보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할 것.

30. 희생자들의 시신과 유해는 친척들에게 인도하여 그들의 독특한 문화에 따라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르도록 할 것.

31. 법의학 전문 민간기구의 작업과 유해에 대한 조사 확인 작업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것. 상기 전문기구들은 인권 민원조사관과 공동작업을 해야 하고 조사관의 사무실은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보관소가 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이와 같은 전문가의 활동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경비를 감안할 때, 국제 공동체의 재정 지원과 기술적인 자문이 특별히 요청된다.

4.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문화를 배양하는 조치

4.1. 상호 존중하는 문화

보고서의 앞장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과테말라에서는 폭력의 문화가 발전되어 왔다. 그 결과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고 불신하는 문화가 생겼다. 이 같은 문화는 분명히 관용과 상호 존중의 문화로 탈바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CEH는 평화협정이 과테말라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서로 관용해주는 평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줄 기본 바탕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과거를 알고 소화하는 것과 억제되지 않은 폭력의 원인과 규모를 아는 것, 아울러 인권을 존중하는 기본 원칙과 자기 방어의 메카니즘 및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평화로운 미래를 공고히 다지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CEH는 국민적 화합과 화해를 위해 문화적 변화를 도모하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평화를 위한 능동적인 교육정책을 통해서만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테말라의 국가와 토착민—특히 마야계 주민—사이의 관계에는 인종차별과 불평등과 배척이라는 분위기가 상존해 있었다. 이 같은 관계는 무장세력이 갈등하는 역사적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착민의 개인적 및 공동체적 권리 보호와 복수 문화 존중 및 서로 다른 문화간의 관계 증진을 보장하는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같은 것을 근거로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보고서 내용을 가르치고 유포시키기

32. 국가는 도덕적 명령이며 의무로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포용하고 과테말라 모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유포시키고 장려하기 위해 모든 창의력이 발휘되도록 지원할 것.

33.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정부는 과테말라 시민단체들과 특히 토착민 단체 및 인권단체들과 공동 협력하고 과테말라의 사회 문화적 현실과 언어 현실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보고서를 유포시키는 운동을 촉진시킬 것.

34. 과테말라의 '마야 언어 아카데미'는 공적 자금을 지원 받아, 여러 나라말을 사용하는 과테말라의 특성을 존중하여 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언어로 번역할 것.

○ 보고서 전체가 적어도 5개 마야 언어, 즉 K'iche, kaqchikel, mam, q'eqchi, ixil어로 번역 출판되어야 한다.

○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사항은 20개 마야어로 번역되어 문자와 구두로 유포되어야 한다.

35. 정부는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garifuna 와 xinca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해 줄 것.

36. 초등과 중등 및 대학의 교육과정에 무장세력이 갈등을 일으킨 원인과 전개 및 결과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평화협정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각급 학교의 수준에 맞는 깊이와 방법으로 포함시킬 것.

상호 존중하는 문화와 평화를 위한 교육

37. 국가는 전국의 인권 민간기구들과 더불어 평화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촉진할 교육운동에 자금을 공동 지원하여, 다양한 정치 사회부문에서 상기 민간기구들이 이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 이 운동은 민주주의와 관용과 인권존중 같은 원칙들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도구로서 대화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운동은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과 평화의 기본 원칙들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발전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38. 정부는 평화협정에 들어있는 교육개혁에 의해 관용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의식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이념적 정치적 문화적 분극화가 빚어낸 분열 노선들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할 것.

요구사항: 과테말라 지역에서 지금까지 전개된 활동을 고려하여, CEH는 미주기구(OAS)가 '문화적 대화계획', 즉 '평화구축을 위한 자원개발'(OAS/PROPAZ)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에 관한 권고사항을 실행하는 일을 지원해 주고 기술적 자문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세계적 차원의 전문성과 활동을 감안할 때,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UNESCO)가 이 과정에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4.2 인권 준수

상호 존중하는 문화와 인권 준수를 강화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목적으로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제적 옹호를 위한 메카니즘

39. 행정 및 입법 부문에서는 과테말라 국가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제적인 인권기관

들과 그 실행 메카니즘을 승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CEH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우선권을 주도록 권고한다.

○ 개인의 고발을 접수하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 선택 의정서'.

○ 개인의 고발을 접수하는 '고문방지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사회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미주 인권협약 추가 의정서' ('엘 살바도르 의정서').

○ '강제 실종에 관한 미주협약'.

○ '국제 형사법원 규정'.

국제 인도법

40. 정부는 국제 인도법의 기준을 국법에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기관 종사자들, 특히 이 규범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규범을 존중하도록 할 군인들에게 이 규범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인권 옹호자들

41. 정부는 인권단체들과 우선 협의하여 특별히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해주는 입법조치를 추진할 것.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관한 행정조치

'포괄적인 인권협정'의 서명자들이 취할 조치와 의무의 중요성을 되풀이 강조하면서, 진압이나 혹은 처벌보다는 순전히 하나의 예방조치로서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42. 공화국 대통령은 헌법상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이 감독하는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장세력이 갈등하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국가 보안부대와 군대의 장교들이 한 행위를 조사하도록 할 것. 조사 목적은 상기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위의 타당성을 국제 인권기구들과 인도법이 정한 최소한도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43. 상기 위원회는 정직성과 민주화운동 경력이 이의 없이 인정되는 무소속 시민 세 사람으로 구성할 것.

44. 상기 위원회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절차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경우에도 CEH의 보고서와 장교들의 신상기록을 유념하면서 이해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것.

45. 그 결과와 인권침해 행위의 규모 및 가혹성을 고려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초안문서 "불처벌 방지조치에 의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련의 원칙들"(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의 내용에 비추어 행정조치를 취할 것.

5. 민주적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5.1. 정의구현과 갈등해결의 전통적인 형태

5.1.가 정의구현

평화협정의 여러 조항에서 과테말라의 정의구현을 위한 제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 강화와 군대의 역할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Strengthening of Civil Power and the Role of the Armed Forces in a Democratic Society)에서도 이것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과테말라 국가에서 가장 큰 구조적 취약점 중의 하나"라고 기술하고 있다. 상기 협정을 이행하는 '사법제도 강화위원회'(Commission on the Strengthening of the Justice System)는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내놓았다.

CEH도 자체 조사결과 사법제도의 취약성과 기능장애가 CEH의 조사대상 기간 중 면책과 형법의 오용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평화협정의 결과로, 공화국 의회는 '국민 화해법'(National Reconciliation Law)을 가결했다. 이 법 제1조로 보아 이 법은 "국내 무장세력간의 갈등에 연루된 사람들의 화해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 간주된다.

전자를 고려하여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평화협정에 관한 의무

46. 과테말라의 국가권력은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 강화와 군대의 역할에 관한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의에 관한 그들의 의무 이행을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길 것. '사법제도 강화위원회'가 내놓은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권고사항, CEH가 자기 것으로 여기며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는 그 권고사항들은 예누리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국민 화해법

47. 국가 권력은 '국민화해법'을 그 모든 규정대로 과테말라의 다른 법률과 관련시켜 시행하고 또 시행할 것을 요구할 것. 상기 법률에 의해 책임이 소멸되지 않은 범죄들, 특히 다음과 같은 제 8조의 "과테말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에 따라 시효가 없거나 형사책임이 소멸되지 않은 범죄들은 물론 민족말살, 고문, 강제실종과 같은 범죄들"은 기소하고 재판하여 처벌해야 한다.

48. 국민화해법을 적용하는 관계조직은 인권침해와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조장한 사람들을 특별히 주목하여, 이들 범죄에 대한 그들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를 여러 모로 참작할 것.

자료접근권 (Right to habeas data)

49. 정부는 인신보호영장 청구권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백한 절차로서 빨리 실제적으로 확립하고, 헌법 제 31조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기록보존소에 있는 정보나 서류 혹은 다른 형태의 공적 및 사적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힘을 실어주는 법률안을 공화국 의회에 제출할 것. 이 법안은 또한 개개인과 그들의 종교, 정치단체 가입, 노조활동, 사회활동에 관한 정보와 그들의 사생활과 관련되는 다른 자료들을 수집, 저장, 은닉하는 행위들을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5.1.나 전통적인 형태의 갈등 해결책

'사법제도 강화위원회'는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들과 국가의 재판제도를 망라하여 이 두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 일련의 권고사항을 최종보고서에 포함시켰다.

CEH는 그 보고서에서 개설(概說)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들과 그 방법들을 적용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을 제거하려는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그들을 경멸하는 경향이 1980년부터 무장세력간의 갈등이 끝날 때까지 거의 변함 없는 특징이 되어온 사실을 지적했다.

상기한 모든 것을 고려하고 '사법제도 강화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들을 실행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CEH는 특히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법적 통합

50. 관습법으로 알려진 법을 인정하고 과테말라의 법률구조 속에 통합함으로써, 과테말라 헌법이 인정하는 권리와 국제 인권조약이 침해되지 않는 한, 사법제도와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식이 그 원칙과 기준,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정중하고 조화되는 관계를 정립하도록 할 것.

교육

51. 법을 가르치는 대학 및 다른 국가 교육기관들은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식의 규범들에 대한 지식을 교육 프로그램의 뚜렷한 주제로 포함시킬 것.
52. 교육부는 관습법으로 알려진 법을 구성하는 관행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가 포함된 자료의 발간을 지원할 것.

5.2 시민권의 우위(優位)와 군대의 역할

5.2.가 법적 개혁

무장세력이 갈등하는 동안 군기관원들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와 군사화로 인해 뚜렷이 약화된 사회구조로 보아, CEH는 민주체제 속에서 시민사회와 군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민간통치에 군이 복종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확립할 입법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조치에는 군사규범 채택, 인권존중을 촉구하는 헌법규정 준수, 법에 의한 징계, 군의 비정치적 역할, 군의 역할을 국방에만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CEH는 또한 군의 정보활동이 인권상황과 민군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CEH는 군대가 과거에 반민주적인 행동을 통해 저지른 심한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는 이 같은 정보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종종 비밀스런 작전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인정한다.

CEH는 어떤 명령에도 절대 복종하는 것이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위험스러운 요소들 중의 하나라고 믿는다.

이 같은 것을 근거로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53. 정부는 아래 54~59번의 권고사항을 실행하는 조치가 포함된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공화국 의회에 제출할 것. 이들 법안은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 강화와 군대의 역할에 관한 협정'에 정해진 바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군 조직법 개혁

54. 대통령 및 부통령 소속 참모조직은 민주국가에서는 불필요함으로 폐지할 것.

군 관련법 개혁

55. 공화국 헌법과 평화협정에서 나온 개혁안에 따라 법적 도덕적 교의적 기준에 의거하여 새로운 군법을 기초하고 발효시킬 것.

56. 이미 공화국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올바른 개념, 즉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용납되지 않고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용납이 되는 징계와 복종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 군법에 포함시키고, 무슨 명령이든 그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지워지는 것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군법에서 삭제할 것.

57. 군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

국가 정보기구에 관한 새로운 입법

58.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안을 공화국 의회에 제출할 것.

가) 민간 및 군 정보기관의 조직과 임무 및 한계를 분명히 정의 하고, 후자에게는 군사 문제만 담당하도록 제한하고,

나) 국가 정보기구의 모든 양상을 국회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할 분명한 절차를 설정할 것.

59.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 강화와 군대의 역할에 관한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관한 의무들,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승인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행할 것. 즉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방법에 관한 법률',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외교문제나 군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을 규제하는 법률', 새로운 군의 역할과 조화를 이루는 군 참모부 정보국의 관할구역 설정, '민간 정보 분석국'의 구성 및 전략 분석관의 배치.

5.2.나 새로운 군사 독트린

60. 정부는 과테말라 군을 위한 새로운 군사 독트린을 마련할 것. 이 독트린은 내부 검토회와 시민단체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어야 한다. 이 독트린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라는 기본 틀 안에서 사회와 군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해야 한다. 이들 기본 원칙들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 있어야 한다.

가) 군의 기능은 주권의 수호와 국가의 독립 및 영토의 보전이다. 군의 조직은 계급조직이며 법 테두리 내에서 규율과 복종의 원칙에 기초를 둔다.

나) 군은 주권이 과테말라 국민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군은 이 주권의 행사에 의한 모든 사회적 개혁과 변화를 존중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

- 다) 군은 그 행동은 물론 그 법적 기준을 제도적 인권존중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라) 군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투표로 결정되는 정치권력에 종속된다.
- 마) 군은 모든 면에서 헌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바) 군은 비정치적이다. 군은 정당정치권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합법적으로 구성된 모든 정치세력을 존중해야 한다. 이들이 법테두리 내에서 하는 활동을 박해하거나 감시 또는 통제를 할 수 없다.
- 사) 군인들은 그들 직업이 지닌 고유한 한계, 특히 군에 복무하는 동안 정당이나 노조에 가입하거나 일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제도의 비정치적 성격을 보존하기 위한 한계를 수용해야 한다.
- 자) 군인들은 총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그들의 투표권을 자유로이 비밀리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역으로 복무중일 때는 공적인 행동으로나 사회의 언론매체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없다.

61. 군인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다음과 같은 개념 및 기본원칙과 일치되어야 한다.

- 가) 군인은 국방에 복무중인 시민이다.
- 나) 군의 규율은 결코 법 테두리 밖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복종하는 개념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다) 군의 명예에 대한 개념은 인권존중과 분리될 수 없다.
- 라) 단체정신은 높은 윤리기준과 일치해야 하고 정의와 사회봉사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5.2. 다 군사교육의 개혁

- 62. 정부는 과테말라 군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앞에서 열거한 점들을 주제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 63. 과테말라 군에서 CEH의 보고서를 교육과정의 일부로 공부하도록 할 것.
- 64. 과테말라 군의 여러 교육기관은 교수진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여 현재나 과거의 인권침해에 참여한 군인들을 교수직에서 제외시킬 것. 교수진이 엄격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최대한 지니도록 할 것.
- 65. 과테말라 군교육기관의 민간 교수진은 민주화운동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들로 구성할 것.

5.2. 라 군 관련 기타 권고사항

공무: 병역 및 사회봉사

무장세력이 갈등하던 기간 동안 내내 강제 징병과 차별적인 징병관행을 계속 남용하면서 거의 모든 마야계 공동체를 괴롭혀 왔던 것을 감안하고,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 강화와 군대의 역할에 관한 협정'에서 의도한, 병역과 사회봉사를 규정할 공무원법이 앞으로 승인될 것을 고려하여 CEH는 이 법률과 관련, 특히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66. 병역 규정의 징병제도와 절차는 법률에 앞서 평등의 원칙을 엄격히 존중하도록 할 것.

67. 종교적 윤리적 혹은 철학적 신념 때문에 무기를 잡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양심적인 거부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강제로 무기를 잡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 다른 형태의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

68. 본인이나 직계 친족이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관련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에 희생된 자로서 징병연령이 된 청년은 병역을 면제해주고 곧바로 사회봉사를 하도록 배려할 것.

특수부대

69. 앞에서 말한 군사 독트린과 교육의 원칙에 따라, 군대의 교육 프로그램, 특히 'Kaibil 학교'로 알려진 것과 같은 게릴라 소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깊이 있게 수정되어야 한다.

마야의 문화적 명성과 상징에 대한 존중

70. 무장세력간의 갈등 기간 동안 심하게 훼손된 마야인들의 문화적 정체성(正體性)을 존중하기 위해, 군은 이제 독특한 마야의 상징적 의미와 표현을 군 구조물과 부대를 위해 사용하지 말 것.

시민의 평화수호

국가 및 국제 평화는 모든 이의 책임이고 군대의 기본 의무는 평화수호가 되어야 하는 세상에서,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71. 군은 유엔기구나 미주기구의 권위하에 평화주도(主導)와 국제 안보에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72. 군사 전문가들은 과테말라 군이 평화와 과테말라 시민을 위해 헌신하게 함으로써, 모든 과테말라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군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요구사항: 과테말라 군에게 요구되는 것과 비슷한 과도기를 경험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의 정부는 상기 5.2에 열거한 권고사항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술적 재정적 협력을 해주도록 요청한다.

5.3. 공안(公安)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 강화와 군대의 역할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안부대의 구조조정과 전문화 및 부대에서 실시하는 법과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의 문화에 관한 교육의 주요 목적은 경찰의 역할을 진정한 사회봉사자의 역할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경찰력이 전적으로 민간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경찰의 모집과 선발, 교육과 배치에 있어서 과테말라의 다(多)인종적 성격을 존중한다는 것을 뜻한다.

중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에 대한 공안 임무의 전반적인 결함 때문에 과거의 경찰조직을 불신하는 것을 감안하여, 새로 탄생된 국립민간경찰(PNC)은 그들의 독트린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경찰력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관련 국제기구들이 지니고 있는 인권과 국민의 자유 및 법치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원칙들을 최소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기초로 하고, 앞으로 경찰의 임무가 적절히 발전되어 나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CEH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공안부대 독트린

73.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PNC는 시민단체들과 협의, 민간 공안부대의 독트린을 정의하여 마련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시작할 것. 그 독트린은 다음과 같은 것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가) 어떤 형태의 차별대우도 없이 과테말라의 다인종적 성격을 존중하는 사회 봉사.
- 나) 경찰력의 민간성격 개발. 조직, 계급제도, 징계절차의 탈(脫)군사화.
- 다) 철저한 인권존중. 인권을 침해한 동료에 대한 당연한 조사와 기소 및 유죄 판정.
- 라) 민주주의와 법치 존중.
- 마) 전 경찰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훈련의 지속적인 실시.

내부 통제

74. 내무부의 감독하에, PNC청장은 경찰의 사회봉사 독트린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거나 하고 있는 요원들을 경찰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고, 내부 통제나 검열을 위한 새로운 부서를 창설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할 것. 이 부서는 국민과 인권 민원조사관을 접촉하기 쉽도록 하고, 개인이나 단체의 전문적인 직권남용을 자율적으로 조사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것.

토착민의 참여

75. PNC청장은 토착민이 공안업무에 참여할 길을 실제로 개방해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할 것.

- 가) 경찰 후보의 최종 배치는 물론 학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2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배려.
- 나) 모집과 선발과정 및 다인종 국가의 현실에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차별 배제.
- 다) 경찰학교에서 과테말라의 다(多)문화적 성격과 이(異)문화간의 조화에 관한 교육 실시.
- 라) 토착민 출신 경찰관이 국민과 접촉하면서 토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착민의 제도 및 권위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적 특성인 분쟁해결 형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의 경찰업무 조정.

자원

76. 국가 예산을 결정할 때, 정부와 공화국 의회는 국립민간경찰의 재정을 증액하여 적절한 교육, 현대적인 수단과 장치를 갖춘 장비, 품위 있는 근무 조건을 보장할 것.

PNC의 민간 성격

77.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 강화와 군대의 역할에 관한 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공공질서법’은 어떤 형태의 비상사태에도 경찰의 민간성격을 고려하고, 군에 속하는 임무에 경찰력을 강제로 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78. 평화협정에서 제안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군의 기능과 경찰의 기능을 분리하는 데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군의 공안분야 참여를 극히 최소한도로 제한할 것.

6. 평화와 국민화합을 촉진시킬 기타 권고사항

CEH는 평화와 국민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장세력이 갈등하게 된 원인과 결과를 알고 정면 돌파함으로써 과테말라의 사회·인종·문화적 분열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과테말라 전국민의 사회참여와 공적인 의무수행에의 차별 없는 기여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CEH의 보고서가 과테말라의 과거에 대한 조사에 근본적인 기준점이 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 자체가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원인 및 폭력의 정도와 결과에 대해 해야 할 조사와 분석을 끝낸 것은 아니다. CEH의 보고서는 과테말라에서 계속될 조사의 강령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조사와 분석

79. 과테말라 국민은 과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위한 기초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갈등을 촉발시킨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계속할 것.

토착민들의 정치 참여

'토착민의 정체성과 권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dentity and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서 이미 정해진 공약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는 CEH는 정부가 토착민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를 촉진시키고 인종적 정체성과 밀착된 지방정부를 탄생시킬 의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이 같은 이유에서 CEH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80. 여러 가지 직책과 관련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춘 토착민 전문가들에게 공직과 국가가 채용하는 기타 직책에 참여할 여지를 충분히 마련해 줄 것.

81. 전향에서 말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전술한 토착민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할 것.

인종차별정책과 토착민 예속화 정책 배제

과테말라의 국가와 토착민—특히 마야계 주민—과의 관계가 인종차별과 불평등 및 배척의 분위기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것이 무장세력이 갈등하게 된 역사적 원인들 중의 하나인 점을 감안하여, 토착민의 개인적 집단적 권리보호와 문화적 복수성 존중 및 이(異)문화간의 관계 발전을 보장할 조치들이 철실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하여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82. '토착민의 정체성과 권리에 관한 협정'을 완전 무결하게 이행할 것.

재정 개혁

'사회적 경제적 양상과 농민의 처지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ocial and Economic Aspects and Agrarian Situation)과 모든 과테말라 국민이 사회발전과 사회봉사의 개선에 기여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CEH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거듭 강조한다.

83. 정부는 국가의 자원 동원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시켜, '사회적 경제적 양상과 농민의 처지에 관한 협약'에 정해진 대로 정당하고 공평하며 진보적인 재정개혁을 시급히 실행할 것.

7. 권고사항 이행을 촉진시키고 감시할 담당 기구

CEH는 CEH에 맡겨진 위임사항이 평화를 지향하는 기본 틀 속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 권고사항들을 실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는다. 모든 과테말라 국민이 권고사항의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CEH는 국가와 시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후속조치 기구를 설치하여 권고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도와주고 감시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과테말라에서 평화와 화해를 공고히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단체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화해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감시할 책임은 과테말라에 있지만,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근거에서 CEH는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84. 공화국 의회는 인권위원회의 주도로, CEH의 보고서가 발간된 후 60일 내에 상응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CEH의 권고사항 이행과 감시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승인해 줄 것.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재단" (Foundation for Peace and Harmony. 이후부터는 "재단") 이란 명칭을 가진 이 기구의 권한과 구성, 임명절차, 설립, 설치, 운영기간, 인적 물적 자원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권한

재단의 주요 목적은 CEH가 내놓은 권고사항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재단은 그 권한에 속하는 다섯 가지 주요 활동 영역을 중요시할 것이다.

- 가) 특별한 권고사항의 직접 이행.
- 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후원과 원조.
- 다) 권고사항의 적절한 이행에 대한 감시.
- 라) 역사적 연구의 촉구와 지원.
- 마)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뒷받침해 줄 자금조달 지원.

구성

재단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일하게 될 7명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안배된다.

- 2명은 공화국 의회가 임명하며 소속 정당이 달라야 한다.
- 1명은 정부가 임명한다.
- 민주화 운동경력이 인정되고 평화과정에 헌신하는 무소속 1명.
- 인권과 희생자들을 위한 민간단체 대표 2명.
- 마야계 단체 대표 1명.

관계기관의 임명절차는 의회에서 법률이 제정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명절차

공화국 의회와 정부는 각각 관련 인사들을 임명한다. (정부가 임명하는 인사는 평화부 장관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화 운동경력이 인정되고 평화과정에 헌신하는 무소속 인사는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인권을 위한 민간단체와 마야계 단체의 대표는 각 단체에서 선출과정을 거쳐 선임한다. 이 선출과정은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무소속 인사가 마련하고 도움을 준다.

설립

재단은 이사 임명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설치

재단은 처음 구성된 후 아무리 늦어도 5개월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운영기간

재단의 운영기간은 설치한 날로부터 우선 3년으로 하고, 권고사항이 이행되는 진척상황을 참작하여 의회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적 자원

직원은 기본적으로 과테말라 사람이어야 하며, 조사분야와 인권옹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격자들을 물색해야 한다.

물적 자원

CEH는 유엔 연구사업 사무소(UNOPS)가 CEH의 기부자들과 협의하고 재단의 예산과 운영계획을 참작하여, CEH의 물적 자원과 계산 및 통신 자산을 CEH가 기부하는 방식으로, UNOPS가 재단에 양도해주도록 부탁했다.

국가적 국제적 지원

재단은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국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의한다.

8. 유엔에 대한 요구사항

CEH는 앞에서 열거한 권고사항들이 이행되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과테말라 정전협정 검증단(MINUGUA)을 통해 검증단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

CEH는 또한 사무총장이 재단의 무소속 인사를 임명해주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유엔 기구를 통해 재단에 기술적 지원과 국제 공동체로부터 기부를 받을 길을 터줄 국제 기구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한다.